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959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정성호·천하람·박성준

소병훈 • 이병진 • 복기왕

김문수 • 박희승 • 주철현

안규백 • 이연희 • 윤후덕

최기상 · 채현일 · 황 희

임광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세지출 일몰제도는 조세지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특정 감면조항에 적용시한을 명기한 후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 되도록 하는 것으로 1998년 도입되었음.

그런데 조세지출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최근 70조원을 넘어 80조원대에 이르면서 심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소관 부처가 자율평가 후 일몰기한 연장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현행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간단한 견해와 자료를 제출할 뿐, 종료되어야 하는 항목이 왜 존속해야 하는지, 향후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예상되는 존속기한은 어느 정도인지, 해당 기간 동안 세수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임.

또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심층평가 결과에서 제도개

선 또는 일몰기한이 종료가 요구된 경우에도 심층평가 검토 결과와심층평가 미반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국회에서 해당 항목의 감면조항 유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관 부처가 자율평가 후 일몰기한 연장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출이 지속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심층평가결과와 다른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관련 내용 및 사유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4항 및 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과 제5항"을 "제5항과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4항과 제5항"을 "제5항과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에서 조세감면제도를 계속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한다.
- ⑥ 정부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미리 그 내용 과 사유, 근거 등을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제출을 하거나 정부가 세법의 개정안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	
관리) ① ~ ③ (생 략)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에 따른 의견제출에서 조세감	
	면제도를 계속 존치하여야 한	
	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	
	는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	
	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	
	에 따른 보완대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	
	함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	
	<u>다.</u>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u><신 설></u>	⑥ 정부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조세특	
	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미리 그 내용과 사유, 근거 등	
	을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u>⑤</u> (생 략)	<u>⑦</u>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u>®</u>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제		

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u>제4항</u> 과 제5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 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 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과 제5 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1항부터 <u>제7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조세감면건의, 조세감면에 대한 의견제출, 주요 조세특례의 범위, 조사·연구기관의 지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과 제7항</u>		<u>제5항</u>
⑨ <u>제5항과 제7</u> <u>항</u>	과 제7항	
⑨ <u>제5항과 제7</u> <u>항</u>		
⑨ <u>제5항과 제7</u> <u>항</u>		
⑨ <u>제5항과 제7</u> <u>항</u>		
<u>하</u>	<u>⑨</u>	
	<u>제5</u>	항과 제7
· 	<u> ठ</u> ो	
· 		
· 		
· 		
 ①		
 ①		
 ①		
①		
	<u> ⑩</u> <u>제9항</u>	